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696호(號) 1932(昭和 7)년 8월 3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61호(號)

1928(昭和 3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50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道], 사설철도[私設鐵道] 및 항로[航路] 간[間] 화물연대운송규칙[貨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2(昭和 7)년 9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8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 (1)조선철도주식회사(朝鮮鐵道株式會社) 황해선(黃海線: 협궤[狹軌])의 부문[部] 접속역(接續驛) 「사리원(沙里院)」을 「토성(土城)·사리원(沙里院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(同) (6)조선우선주식회사(朝鮮郵船株式會社)의 부문[部] 부산(釜山) 및 원산(元山) 경유(經由)의 항(項) 및 동(同) (10)조선기선주식회사(朝鮮汽船株式會社)의 부문[部] 부산(釜山), 원산(元山) 및 포항(浦項) 경유(經由)의 항(項) 중(中) 「장전(長箭)」을 삭제(削除)함.